

『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송용자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-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인류에 실현,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을 위하여 구미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2조)
- 시장의 책무, 장려사업계획의 수립(안 제3조~4조)
-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(안 제5조~10조)
- 헌혈장소 설치 지원, 홍보 및 정보 제공, 헌혈의 달 지정·운영(안 제11조~13조)
- 접수·등록창구 설치, 등록기관의 업무(안 제14조~15조)
- 헌혈자 및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,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, 포상(안 제16~18조)
- 비밀준수 의무(안 제1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혈액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4. 21. ~ 4. 28.) 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헌혈과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,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헌혈 및 장기기증자에 독감예방접종과 구미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

-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하고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혈 및 장기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의 지속적인 감소를 막고 생명보호와 인류에 실현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